

잔여지의 수용청구권자 및 그 제한

잔여지의 수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수용재결 이전까지 일단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이고, 수용재결 이후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. (대법원 1992.11.27. 선고 ;91누10688 판결)